

## 8.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512호 1998. 11. 20

### 개정이유

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주택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요건을 완화하고, 분양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, 혈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가. 종전에는 민영주택의 1순위가 될 수 없었던 2주택 이상 소유자도 민영주택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영주택의 수요가 확대되도록 함.
- 나. 수도권지역의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경우 과거 2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재당첨 제한기간을 제한을 폐지하여 민영주택의 수요가 확대되도록 함.
- 다. 민영주택의 1순위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대해 우선분양하던 것을 폐지하고 1순위로 분양받도록 하여 민영주택의 분양절차를 간소화함.
- 라.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경쟁과열구역으로 지정하여 민영주택의 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하던 청약배수제를 폐지함.
- 마. 아파트의 복리시설을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방법을 자율화함.
- 바. 국민주택의 입주자격을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로 하던 것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함.

- 사. 주택분양시 1~3순위 분양후 주거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, 관사·숙소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 및 25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 공개 분양하고 선착순 분양토록 하던 것을, 1~3순위 분양후 바로 선착순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절차를 간소화함.
- 아. 입주일을 최초공급계약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일정기간내에 정하도록 하던 것을, 사업주체가 임의로 입주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.
- 자.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는 주택 청약시 주택분양자금 조달계획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.